제408회 임시회
’23. 4. 20.(목)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충청북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안지윤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 : 2023년 4월 10일

○ 회부일자 : 2023년 4월 11일

3. 제안사유

○ 도내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도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 제정을 제안함.

4. 주요내용

○ 조례의 목적 규정(안 제1조)

○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정의(안 제2조)

○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(안 제3조)

○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·시행 근거 규정(안 제4조)

○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 근거 규정(안 제5조)

○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사업 위탁 근거 규정(안 제6조)

○ 효율적인 스토킹 예방과 피해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·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7조)

○ 예방 및 피해지원과 관련된 업무 종사자 비밀준수의 의무 규정(안 제8조)

5. 검토의견

가. 제출배경

○ 최근 새로운 범죄로 대두되고 있는 스토킹범죄가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, 2020년 4,515건이던 스토킹 관련 112 신고 건수는 2021년 1만 4,509건으로 약 3.2배 증가하였으며, 2022년 상반기까지 신고된 건수는 총 1만6,571건으로 2021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신고 건수 이상임.

○ 도내 스토킹범죄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,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10월 21일부터 2022년 8월말까지 도내 112 신고는 309건이 접수되어 법 시행 전인 직전년도 같은 기간(70건)보다 4배 이상 증가하였으며, 309건 중 48건을 긴급응급조치[6], 62건을 잠정조치[7] 하였음.

○ 스토킹범죄는 주거침입, 감금, 협박, 폭행, 상해, 살인 등 후속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,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친족,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함.

○ 이에 충청북도는 증가하고 있는 도내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적극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, 「충청북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정을 통해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고 도민의 안전을 제고해야 함.

---

6)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단계로,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.

7) 1~4호로 구분되며, 1호 서면경고, 2호 피해자·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금지, 3호 전기통신 이용접근금지, 4호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한 달간 가두는 내용임. 이 단계에서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.

나. 주요내용 검토

○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,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.

- 본 조례는 증가하고 있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권을 증진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,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용어 정의상 문제가 없음.

○ 안 제4조는 도지사는 매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, 제2항 각호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당함.

○ 안 제5조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과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.

- 스토킹 피해지원을 위한 스토킹 신고체계 구축·운영, 피해자 지원시설 설치·운영, 스토킹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·법률·주거 지원, 스토킹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이라 보여지며, 도내 스토킹 발생 및 피해 현황 등에 대한 조사·분석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실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됨.

○ 안 제6조는 관련 사업을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또는 법인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, 안 제7조는 관련 기관,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
-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해서는 안 제5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어야 하며, 사업내용 및 추진방식 등에 따라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또는 법인·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음. 또한, 피해자 보호·지원뿐만 아니라 의료·법률·주거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유관기관들간의 유기적인 협조 및 지원체제 확립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피해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.

○ 안 제8조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과 관련된 업무 종사자의 비밀 준수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, 스토킹 피해자 및 가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됨.

다. 종합 검토의견

○ 스토킹이 새로운 형태의 범죄로 대두됨에 따라 법무부는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을 제정·시행하여 스토킹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며, 여성가족부는 「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을 제정(2023. 1. 17.제정, 2023. 7. 18.시행)하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음.

○ 「충청북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」 제정을 통해 관련법에 근거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 뿐만 아니라,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·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지자체의 책무를 강화함으로써, 도내 스토킹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·지원하여 도민의 안전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

참고 스토킹범죄 현황

□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스토킹 피해 상담 현황

< 지원시설 스토킹 상담 현황 >

구분	상담(건)			
	소계	1366센터	가정폭력 상담소	성폭력 상담소
2020	2,209	1,175	469	565
2021	5,353	2,710	1,461	1,182
2022. 상반기	2,731	2,731	(집계중)	(집계중)

*출처 : 여성가족부 보도자료(2022.8.25.)

□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스토킹 피해 신고 현황

< 112 스토킹 신고 현황 >

구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 상반기
신고 건수	2,921건	5,468건	4,515건	1만 4,509건	1만 6,571건

*출처 : 경찰청 제출자료(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형석 의원(2022.9월))

○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 대비 시행 후('22년 6월말 기준) 일평균 신고 3.6배↑

< 112 스토킹 신고 현황 (일평균) >

구분	신고(일평균)
처벌법 시행 전 ('21.1.1~10.20)	23.8건
처벌법 시행 후 ('21.10.21~'22.6.30)	86.2건

*출처 : 여성가족부 보도자료(2022.8.25.)

□ 도내 스토킹 피해 신고 현황

구분	신고 건수	검거	구속
처벌법 시행 후 ('21.10.21~'22.8.31)	309건	141명	3명

*출처 : 충북경찰청

※ 공식적인 신고, 상담 통계 이외에 스토킹 범죄까지 포함한다면 증가 추세는 더 크다고 볼 수 있음.